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5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2. 9.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11. 13.
- 회부일 : 2020. 11. 13. (의안번호 : 20 - 177)

2. 제안이유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4. 관계법령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이며,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1조, 제2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4조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명시함.
- 검토의견으로는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,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